

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. 12. 30 조례 제209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제3조(교육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
2.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
3.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
4.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
5. 강사에 관한 사항
6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·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교육의 통지) 시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탁자의 보고사항)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